

생명.안전이 뒷전인 기업구조 왜 안 바뀔까요?

매번 현장 책임자만 솜방망이 처벌하고
대표이사, 기업(법인), 고위공무원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



이들을 처벌해야 바뀝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1년 밝혀진 가슴기살균제 참사
매일 수천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병들고 5명씩 죽는 나라!
모두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이 우선인 기업 경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말단 책임자를 솜방망이 처벌할 뿐이었습니다.
정작 기업을 뜯어고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나 고위공무원들은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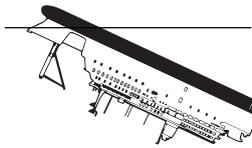
옥시싹싹

가슴기살균제 참사
(1994년 ~ 현재)

신고된 **사망 1,131명** (계속 증가)
피해신고 5,500명 이상

(1995~2011년 폐렴사망자 7만명 중 2만명 영향 추정)

- 옥시 J 전 대표 (무죄) 선고(1심)
- 옥시 S 전 대표 징역 7년(1심)
- 제품 판매 승인 공무원 처벌 전혀 없음



세월호 참사
(2014년)

사망 304명

- 청해진해운 K 대표 징역 7년, 벌금 200만원
- 청해진해운 법인 기름유출로 벌금 1천만원
- 해경 123정장(함장) K 경위 징역 3년
- 해양수산부, 해경 고위공무원 처벌 전혀 없음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2015년)

인화성 잔류가스를
부실 점검한 채용접작업 지시

사망 6명 (모두 협력업체 노동자)

- 한화케미칼 공장장 징역 10개월
 - 과장, Y 대리 금고 1년
 - 협력업체 대표 징역 8개월
 - 소장 징역 10개월
 - 고용노동부는 사고난 후에야 특별감독 실시
- 이마저도
모두
집행유예
2년

공통점

- 솜방망이 처벌
- 기업(법인)은 처벌받지 않았음
- 공무원도 처벌받지 않았음

세월호와 가슴기살균제 참사가 남겨준 과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필요해



2017년 4월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안전 조치가 안 된 결과로

노동자와 시민이

일터나 다중이용시설, 버스, 기차, 배, 비행기 등에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법인), 고위공무원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정부관료가

안전 사고를 핵심 문제로 여겨야

뿌리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이미

<기업 살인(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태도는

한국의 관대한 처벌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영국 볼드윈스 크레인 하이어 소속

크레인운전기사 **1명 사망**
(2011년)



130톤 크레인 주행중 브레이크 고장, 제방 충돌후 운전석 눌림

벌금 15억원(90만 파운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 적용

미국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아진USA에서

인력파견업체 노동자 **1명 사망**
(2016년)



- 안전 장치 없는 산업용 로봇에 부딪혀 사망

아진USA **벌금 30억원**(252만 달러)

인력파견업체 2곳 각각 **벌금 3,000만원**
(2만5천달러)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핵심 요구!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한도 없이 1인당 산정된 징역, 벌금을
모두 더해서 가중 처벌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 사망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상해시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2명 이상 사망 또는 상해시 기간 및 금액을 (합해서) 가중



기업(법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주들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을 우선순위에 놓게 합니다.

법인

- 사망 또는 상해시 10억원 이하 벌금
-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 범위 내 가중 가능
- 영업정지, 보호관찰, 공계약 배제, 자금공모금지 등 병과 가능



말단 공무원만이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까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직무 유기 공무원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
(중앙 행정기관 장 포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함께 요구합니다!**